

## 第4章 美·싱가포르 FTA를 통해 본 韓·美 FTA 金融協商 이슈 점검

河駿炯\*

### 1. 논의 배경

한국과 미국은 2006년 5월 19일 FTA 협정문의 양측 초안을 상호 교환하였으며, 이 초안을 토대로 6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양측 초안 모두 금융서비스에 관한 별도의 장을 두고 있어서 양국 금융산업의 상호개방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이 부상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 FTA 협정문 초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양국의 합의하에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논의의 기본 틀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FTA 협정문들과 상당 부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미국과 싱가포르가 맺은 FTA 협정 금융서비스 관련 부분을 주요 쟁점별로 개관함으로써 한미 FTA 금융협상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2. 미·싱가포르 FTA의 주요 내용

미·싱가포르 FTA 금융서비스 협정문의 기본 구조는 본문과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문에서는 협정문의 적용범위, 적용대상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금융기관의 시장접근, 국경간거래, 신금융상품, 불합치조치 및 예외, 분쟁해결, 정의(definition), 기타 투명성, 금융서비스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ttee) 등에 관한 조항(Article)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서에서는 본문내용에 대한 주석으로서 구체적 약속과 양국의 불합치조치 목록 등을 나열하고 있다.

미·싱가포르 FTA는 협정문의 적용대상을 (a) 상대국의 금융기관, (b) 당사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상대국의 투자자들(investors) 및 투자(investments), (c) 국경간 금융서비스

---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거시경제팀)

거래로 나누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FTA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a) 공공퇴직연금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b) 당사국 및 당사국 공공기관의 보증 또는 금융자원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서비스 등의 공공영역이 이러한 부문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에서 열거된 공공영역의 금융서비스가 만약 다른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수행될 수 있는 경우에는 FTA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단서는, 예컨대 우리나라의 우체국 예금보험 등의 공공 금융서비스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우체국은 공공영역에 속하지만 우체국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다른 금융기관들의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될 경우 FTA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공공과 민간의 중간영역에 존재하는 부문들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의 역사적·제도적 기원, 그리고 그 본래 목적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그 결과 공적 필요성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FTA의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FTA를 비롯한 여러 무역협정에서 대상국 모두는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와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 MFN)를 일반적으로 요구한다. 내국민대우는 당사국이 상대국 투자자 또는 업자를 내국민 해당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며, 최혜국대우는 당사국이 비당사국(제3국) 투자자 또는 업자에 비하여 상대국의 투자자 또는 업자를 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는 FTA에서 쌍방이 동일하게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서로 상이한 제도와 법규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에 대한 불합치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장접근(market access: MA)은 각국의 FTA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완전한 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상대국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기관의 수, 금융서비스 거래량 또는 자산총액, 금융서비스 총 매출액, 금융서비스 관련 총 고용인원,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의 법적 형태 등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싱가포르 FTA는 상업적 주체에 대해서는 시장접근의 포괄적 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의 경우에는 보험업 일부, 외환시장 일부, 신용정보업(중개 제외) 등에 대해서만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협정문 본문에서와는 달리 부속서에서는 양국이 상당한 수준의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미 FTA에서도 부속서에

서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미-싱가포르 FTA에서는 국경간 금융서비스(cross-border supply of financial services)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국경간 금융서비스란 일국에 위치한 금융회사가 타국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지점이나 자회사 형태의 상업적 주재 없이 공급하는 금융서비스로 정의된다. 현재 각국은 해상보험, 항공보험, 재보험 등 보험산업 몇몇 부문을 제외하고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를 양허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국경간거래가 소매금융시장에까지 지나치게 확산될 경우 각국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업적 주재에서와 같은 금융노하우의 전수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미 FTA에서도 국경간거래와 관련해서는 미-싱가포르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부문에서만 이를 허용하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부속서에서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이 허용되는 부문을 명시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다음과 같은 부문을 허용하고 있다. 우선 보험과 보험관련 서비스 중 (a) 다음의 리스크에 대한 보험 : (i) 선박 및 상업적 항공 및 우주선 발사 및 적재화물(위성 포함), 해당 보험을 통하여 운송되는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수송수단 및 그로 인한 모든 종류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하고자 하는 보험, (ii) 국가 간에 운송되는 상품 (b) 재보험 및 재재보험과 보험에 부수적인 서비스와 보험중개 등이 허용된다. 또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에서는 금융정보와 금융데이터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과 이전 그리고 은행과 기타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기타 부수적인 서비스(중개 제외) 등이 허용된다.

한편 싱가포르는 다음의 부문에서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를 허용한다. 우선 보험과 보험관련 서비스 중에서 (a) 재보험과 재재보험, (b) 보험회계사, 손해사정인, 자문서비스로 구성된 보험 부수 서비스, (c) 다음으로 구성된 "MAT"(Marine, Aviation, and Transit) 손실 보험 (i) 선박 및 상업적 항공 및 우주선 발사 및 적재화물(위성 포함), 해당 보험을 통하여 운송되는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수송수단 및 그로 인한 모든 종류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하고자 하는 보험, (ii) 국가간에 운송되는 상품, (d) 중개인의 재보험 중개 및 (e) 중개인의 MAT 중개 등이 허용된다. 또 은행업 및 기타 금융서비스에서는 (a) 금융리스, 단, 싱가포르 내 은행의 고객정보 열람은 싱가포르에서 인가 받은 금융기관으로 제한 (b) 금융정보의 제공과 전송 (c) 금융데이터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표 III-6> 국경간 거래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싱가포르FTA 시장접근 비교

금융업종		GATS (우리나라 양허안)	미-싱가포르	
			미국	싱가포르
직접보험 (공동보험 포함)	생명보험	×	×	×
	손해보험 (생명보험 이외의 모든 보험)	△ (해상수출입 적하, 항공 보험만 허용)	△ (해상·항공·운 송보험만 허용)	△ (해상·항공·운 송보험만 허용)
재보험·재재보험		○	○	○
보험중개 및 대리서비스 등 보험 중개업		×	○	△ (싱가포르의 경우 국경간거래 관련 중개만 허용)
손해사정, 보험계리 등 보험관련 보조 서비스		×	○	○ (보험계리, 손해 사정, 위험평가, 상담만 허용)
예금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에 의하여 대중으로부터 자 금을 얻는 행위		×	×	×
소비자신용, 담보대출, 팩토링, 상업거래금융 등 모든 형태 의 여신		×	×	×
금융리스		×	×	○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 등 지불 및 송금서비스		×	×	×
보증 및 약정		×	×	×
외환시장이나 장외시장 또는 다른 시장에서의 다음과 같은 상품의 자기 매매 또는 고객 위탁 매매 (i) 단기금융상품(수표, 어음, 예금증서 포함) (ii) 외환 (iii) 금융선물 및 옵션을 포함한 파생상품 (iv) 스왑 및 선도금리계약을 포함한 환율 및 이자율상품 (v) 양도성 유가증권 (vi)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양도가능 상품 및 금융자산		×	×	△ (싱가포르 내 금융기관과의 단기금융상품, 외환, 환율 및 이자율 상품 거래)
주간사로서의 인수와 배분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발 행에의 참여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	×	×
자금중개업		×	×	×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 모든 형태의 간접투자관리, 연 기금 관리, 보관, 수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관리		×	×	×
증권, 파생상품 및 그 밖의 양도가능한 상품을 포함한 금융 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	×	×
금융정보 제공 및 이전,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업자에 의한 금융정보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 제공		×	○	○
신용조회 및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 및 자문, 인수, 기업구조조정 및 전략에 대한 자문 등 은행업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업 제외)의 영업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적인 금융서비스		×	△ (중개는 제외)	△ (중개는 제외, 제한적인 기업 금융자문 포함)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참고자료, 『미국의 금융부문 FTA 체결 사례 분석』

제공 (d) 싱가포르 내 금융기관과 단기금융상품, 외환, 환율 및 이자율상품의 거래 (e) 다음과 같이 제공된 기업 금융자문 서비스 : (i) 관계회사나 신임이 있는 투자들에게만, 단, 고객들은 그러한 자문을 근거로 증권 공모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자문은 신임이 있는 투자자가 아닌 고객의 주주들이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아니함. 또는 (ii) 자본시장 서비스 면허를 보유하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증권선물법상 기업금융에 관하여 자문 (f) 은행업과 그 밖의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제(e)호에 기재된 중개 및 서비스를 제외하고, 향후 싱가포르에서 허가되는 범위의 자문 및 기타 부수적인 금융서비스 등이 허용된다.

한편 양국은 자국 영토에 소재하는 자연인 및 소재지와 무관하게 모든 자국민들이 타방의 영토에 소재한 타방 당사국 국적을 가진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금융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에서 열거된 분야 이외의 분야에서도 국경간거래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뜻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조항은 당사국이 동 공급자가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영업(doing business) 및 판촉행위(solicitation)를 하는 것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즉, 판촉행위가 없는 한 일국의 소비자가 타국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국경간 서비스를 일부러 찾아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굳이 금지하지 않되 판촉이 수반되는 적극적 영업은 위에서 열거된 분야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각 당사국이 영업 및 판촉행위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영업 및 판촉행위의 정의를 둘러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 신금융서비스(New Financial Services)의 허용도 중요한 이슈이다. 신금융서비스는 특정 회원국에서는 제공되지 않지만 다른 회원국에서는 제공되고 있는 금융서비스로 정의되며, 이를 개방할 경우 일국은 자신의 영토 내에 주재하는 타국의 금융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영토 내에서 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미-싱가포르 FTA에서는, 양국은 타방의 금융기관에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 금융기관에 추가적 법적 조치 없이 공급을 허용했을” 신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싱가포르 FTA의 경우에는 신금융서비스 때문에 법제도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한-미 FTA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제약이 있는데, 일방 당사국은 신금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조직형태 또는 법인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서비스 공급 인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단, 일방 당사국이 신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인가를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합리적인 기간(주로 120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하며 건전성에 대한 이유로만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 즉, 건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해서 인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임원 및 이사회(Senior Management and Board of Directors: SMBD) 조항에서는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금융기관에 특정 국적의 개인을 임원 또는 핵심 직원으로 고용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금융기관에 당해 금융기관 이사회의 단순 과반수를 초과하는 수를 자국 국적인 자, 자국 거주자 또는 그 배합으로 구성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속서의 불합치조항을 통해 이와 관련한 많은 제한들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미국·싱가포르 FTA는 금융서비스 관련 분쟁해결에 대한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일국 투자자와 타국 정부 사이의 분쟁의 경우 원칙적으로 투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협정문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서비스 부분의 조항이 문제될 경우에는 금융서비스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ttee)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한다. 정부간 분쟁의 경우에는 금융관련 법규 내지 실무에 전문성을 갖춘 자들로 금융서비스 패널을 구성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미국·싱가포르 FTA는 정보취급, 투명성, 금융시스템의 FTA 준수 보장 등에 대해 협정하고 있다. 즉, 양국은 어느 경우에도 개인의 금융거래, 계좌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법령위반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또, 금융서비스 관련 각종 규정 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규정 제정과정 내지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피규제자에게 충분한 수준의 사전고지, 의견수렴, 결과통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거래소나 결제기구와 같은 자율규제기관의 내국민대우 원칙 등의 준수, 지급 및 결제기구에 대한 상대국 금융기관의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 3. 불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를 통한 예외 인정

각국의 금융시장은 상이한 역사와 제도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FTA를 통해 이를 완전히 통합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각국은 협정문의 부속서에 불합치조치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자국의 고유한 금융환경을 상당 부분 보호하고 있다. 미국·싱가포르 FTA도 FTA의 적용이 배제되는 불합치조치 또는 예외조항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불합치조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 국내 정부 차원에서 FTA의 내용과 합치하지 않는 조치들로서 부속서에 그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의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통화·신용·환율정책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차별적 조치, 금융시스템의 통합성 유지를 위한 비차별적 자금송금 제한조치, 기타 사기행위 또는 금융서비스 불이행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비차별적 조치 등은 FTA 적용의 예외로 인정된다.

미국-싱가포르 FTA에 명시된 미국 측 불합치조치의 주요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은행업에서는, 국법은행의 모든 이사는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다만 통화감독청(OCC) 장은 총 이사 중 과반수 미만에 대하여는 시민권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이사의 과반수를 미국시민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미국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조항으로서 시장접근(MA), 경영진 및 이사회(SMBD) 관련 FTA 조항에 대한 유보에 해당한다. 또, 10만 달러 미만의 미국 내 개인 예금을 수취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은행은 부보 예금 자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지점이나 대리점 형태로 진출한 외국은행의 소액예금 수취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시장접근(MA) 조항에 대한 유보이다.

또 “외국은행은 연방준비제도의 회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연방준비은행 이사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외국인 소유 은행자회사(foreign-owned bank subsidiaries)는 동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은 내국민대우(NT)에 위배된다. 또 “앨라배마, 캔자스, 노스다코타 및 와이오밍에서는 지점 및 대리점 설립이 불가능하다.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오클라호마 및 웨스트버지니아에서는 지점 설립은 금지되나 대리점은 설치 가능하다”는 조항은 내국민대우(NT)와 시장접근(MA)에 대한 유보가 된다.

한편 보험업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모든 주 및 콜롬비아 특별지구 및 푸에르토리코의 모든 기존의 불합치조치”를 인정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업에 대한 감독권이 각 주정부에 부여되어 있는 미국의 현행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FTA에도 불구하고 각 주정부가 외국 보험회사에 부과하는 차별적 규제들이 모두 인정되게 된다.

한편 싱가포르도 다양한 형태의 불합치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자국의 금융산업을 상당 부분 보호하고 있다. 예컨대 “외국은행에 새로운 종합은행(full bank)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적격종합은행 특혜(Qualifying Full Bank privileges)는 6개 외국은행으로 제한된다. 미국은행에 대한 적격종합은행 특혜 허가 수에 대한 제한은 미-싱가포르 FTA 협정 발효 18개월 이후에 소멸된다”는 조항은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유보이며, 미국은행에 대한 시장개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보여준다. 또, 외국은행의 1개 이상의 영업점 운영, 영업점의 ATM 설치, EFTPOS(Electronic Funds Transfer at Point of Sale) 망을 통한 직불 서비스 제공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적격종합은행이면서 싱가포르 현지법인인 미국은행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싱가포르는 “외국인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연합하여 싱가포르 법인인 은행(이미 미국 금융기관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는 싱가포르 법인 은행 제외)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권을 획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동일인이 싱가포르 법인인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 지분 또는 의결권의 5%, 12%, 20%를 초과하여 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확보하거나 싱가포르 법인인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피합병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기준 한도를 초과하는 지분획득을 승인하는데 있어, 장관은 부당한 지배를 방지하고 공공 이익을 보호하며 금융시스템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내국민대우를 제한하고 있다.

또 증권업에서도 “은행 및 투자은행은 대 고객 금융선물거래를 하기 위하여서는 싱가포르 내에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은행 및 투자은행은 싱가포르 내에 별도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서만 싱가포르 내 증권선물거래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미국 금융회사의 국내 시장접근을 제한하며 자산운용회사의 경우에도 다양한 자격요건을 둠으로써 내국민대우를 유보하고 있다.



보험업에서도 “보험중개회사는 싱가포르 법인이어야 한다. 자사전용보험회사(Captive Insurer)는 싱가포르 법인이어야 한다”는 등의 유보조항들을 통해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 보험회사들에게 다소 차별적인 자격요건들을 부과함으로써 내국민대우를 유보하고 있다. 아울러 “제3자 자동차 책임보험 및 근로자 보상에 의한 의무보험은 직접 또는 싱가포르 내 허가받은 보험회사의 중개인을 통하여서만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경간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 〈표 III-7〉 미국·싱가포르 FTA 금융협정문 구성 주요 내용

\*03.5월 체결 합의

구 분	내 용
적 용 범 위	금융기관, 투자자 및 투자, 국경간 거래
내 국 민 대 우	적용
최 혜 국 대 우	부여(단, 기존 FTA 등은 제외)
시 장 접 근 ( M S )	제한 금지
국 경 간 거 래	개방할 분야만 열거하는 방식 * 은행·증권(을 제외한) 해상·운송·항공보험, 재보험/재재보험, 보험중개 및 금융부수서비스 등
신 금 용 서 비 스	내국민 대우 원칙하에 국내법 범위내에서 허용
임 원 및 이 사 회	거주 및 국적 요건 제한 (이사회의 경우 자국민 50% 이내)
불 합 치 조 치	규제가 필요한 부분만 열거하는 방식 * 현존유보와 미래유보로 구분되며 현존 규제조치의 자발적 자유화는 현존 유보 수정 없이 자동적으로 자유화
예 외 조 치	예금자보호, 금융기관 건전성, 금융시스템 안정 등
투 명 성	입법예고, 의견조회, 청문 등
비정부기관, 협회	금융기관협회, 청산결제소 가입 등에 대한 내국민 대우 부여
보 험 서 비 스 촉 진	보험서비스 공급자가 신속하게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
분 쟁 해 결 절 차	건전성 조치 등에 대해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시 금융당국의 결정이 분쟁법 원을 기속
정 의	금융서비스 정의 조항

## 4.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싱가포르 FTA에서는 금융시장의 폭넓은 상호개방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불합치조치 등을 통해 양국 고유의 금융제도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회피하고 있다. 이는 금융제도가 국가 경제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품시장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임을 보여준다.

아울러 서비스 공급형태별로 보면, 국경간거래는 협정에 명시된 특정 부문에서만 허용하고 일반 소매금융 분야에서는 폭넓게 제한하고 있다. 반면 상업적 주채를 통한 개방은 가능한 한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외국 금융회사가 자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자국법을 바탕으로 영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양국은 국경간거래 급증이나 양국 금융제도의 충돌로 인한 금융시장의 충격과 혼란은 최대한 예방하되 상업적 주채를 통한 현지화는 가급적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FTA 금융협상도 위와 같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규모 면에서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큰 차이가 있어 실리를 중시하는 미국 측에서는 업계의 이해를 반영하여 싱가포르의 경우에서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 공청회에서 제기된 업계의 요구사항들에 비추어볼 때 자산운용업에서 국경간거래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본점 자본금 인정 문제,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 등 국내 제도도 문제삼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측도 국내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라는 원칙을 지키는 데 머무르지 말고 미국시장 진입을 통한 실리추구 가능성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업계를 중심으로 미국시장에서 영업을 해나가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미국 측의 다양한 국내 규제들에 대해서 연구·검토하여 협상에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